

**2025년 하반기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2026. 6.



금 용 감 독 원

목 차

I. 매출·매출원가	1
1. FSS/2606-01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2. FSS/2606-02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3. FSS/2606-03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II.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8
1. FSS/2606-04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2. FSS/2606-05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III. 기타 자산·부채	11
1. FSS/2606-06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2. FSS/2606-07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3. FSS/2606-08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IV. 주식 미기재 등	15
1. FSS/2606-09 투자자간 약정 주식 미기재	
2. FSS/2606-10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참고) 既 공개목록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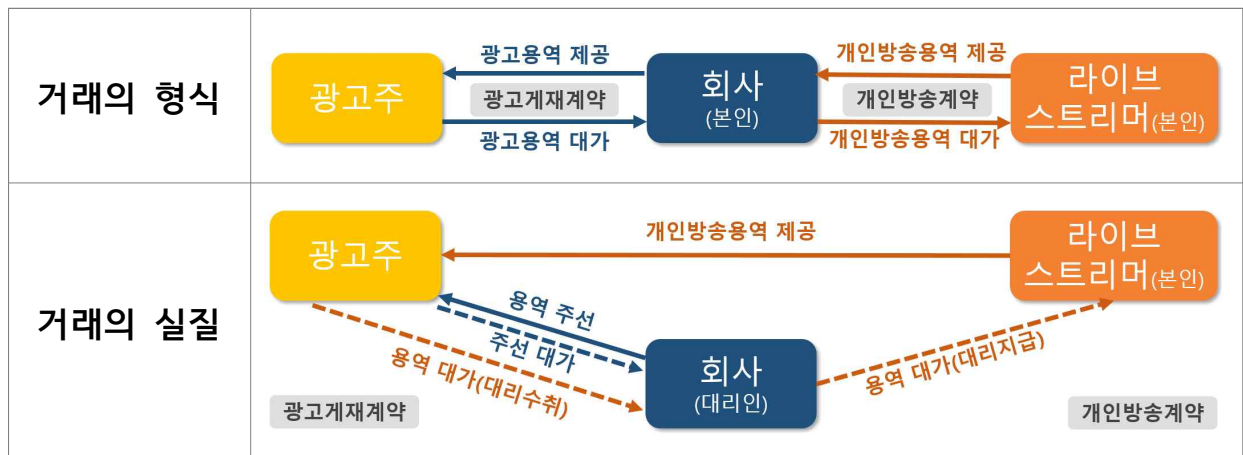
FSS/2606-01 :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과대계상

- ▣ **쟁점 분야**: 수익인식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결정 연도**: 2025년
- ▣ **회계결산일**: 2021.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광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라이브 스트리머가 자신의 개인방송을 통해 광고주의 게임을 시연 또는 체험하는 형태의 용역(이하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해 주는 사업을 개시하였다. 회사는 해당 용역과 관련하여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가운데서 라이브 스트리머에게 지급한 다음에 남은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대가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회사는 결산 과정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관련 본인·대리인(총액·순액)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거래실질을 변경하거나 적절한 검토 없이 기본계약서의 주요 내용(방송내용·횟수, 회사의 수수료율 등)을 세부계약서로 이동시키거나 이메일로 대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가 개인방송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외관을 조성하고, 해당 광고 관련 용역에 대해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거래실질상 라이브 스트리머(본인)가 광고주(고객)에게 개인방송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대리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실질과는 달리 마치 개인방송용역 그 자체를 제공하는 본인인 것처럼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다.

회사를 대리인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

- ① 라이브 스트리머가 직접 영상물 제작·편집 및 업로드
- ② 광고주가 직접 라이브 스트리머의 계약조건 및 수행결과를 최종 검수·승인
- ③ 이행책임 및 부실이행시 불이익을 사실상 라이브 스트리머가 전적으로 부담
- ④ 라이브 스트리머는 회사와 고용전속계약 관계가 없는 독립된 개별사업자로서, 회사는 라이브 스트리머의 개인방송용역을 구속력 있게 미리 확보할 수 없음
- ⑤ 라이브 스트리머의 수취 보수는 라이브 스트리머와 광고주의 합의로 결정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22, 26, B34, B35, B36, B37 등에 따르면,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수행의무를 식별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기업은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그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대리인)를 판단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대리인에 해당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 등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라이브 스트리머가 광고주에게 개인방송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개인방송용역을 통제하지 못하며, 회계기준상 명시된 통제 보조지표에도 부합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 해당하고,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순액 수익인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단순히 회사의 설명만 듣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합리적 근거 없이 단지 기본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 증빙으로 확인하는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된 수익인식을 판단하는 경우 단순히 기본계약서만 검토한다면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감사인은 매출 등 회사의 회계 부정 및 오류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감사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질문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3자간 거래구조로 이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의 경우,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FSS/2606-02 : 도급공사 진행률 산정 오류

-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 **결정 연도** : 2025년
- ▣ **회계결산일** :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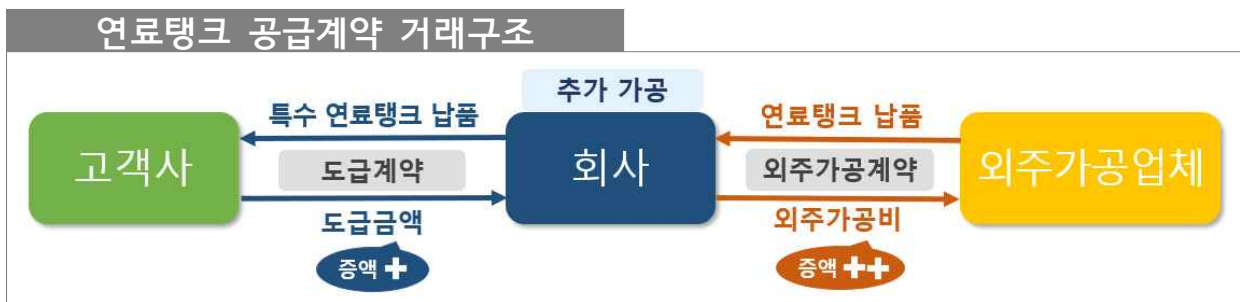
A사(이하 '회사')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x1년 중 고객사와 특수 연료탱크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연료탱크 제작은 외주가공업체에 외주를 맡기고 해당 연료탱크에 회사가 추가로 가공(보온재 시공)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회사는 관련 매출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였다.

수주 당시에는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약 20억원의 이익을 예상하였으나,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제작원가가 계속 증가하였고, 외주가공업체도 외주가공비 증액을 요구하였다.

결국 회사는 x2년 중 고객사 및 외주가공업체와 합의하여 도급금액과 외주가공비를 증액하는 계약변경을 하였다. 외주가공비 증액분이 도급금액 증액분을 크게 초과함에 따라 계약변경을 반영한 프로젝트 예상 영업손익이 약 △100억원으로 감소하였다.

계약변경에 따른 손실을 x2년에 전부 반영할 경우 거액의 공사손실(공사손실충당부채)를 인식하게 되고, 영업이익에 연동되는 임직원 성과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바, 회사는 ERP시스템을 조작*하여 일부 연료탱크 관련 계약변경 금액만 당기(x2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차기(x3년)에 반영함으로써 도급공사의 진행률과 관련 손익을 왜곡하였다.

* 회사는 당초 ERP시스템상 도급액과 실행예산에 증액을 모두 반영하였으나, 이후 일부 연료탱크 관련 도급액·실행예산 증액을 취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2년 중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변경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진행매출 회계처리 시 계약변경을 모두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계약변경 금액의 일부만 당기(x2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차기(x3년)에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8 및 문단 21에 따르면, 나머지 재화나 용역이 그 전에 이전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아 단일 수행의무의 일부를 구성한다면, 그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회계 처리한다. 계약변경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인식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59 및 문단 66에 따르면,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중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변경 계약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변경일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는 도급공사의 충당부채 잔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7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여야 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인은 진행매출에 대해 통제테스트와 세부테스트를 병행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였으나, 중요한 통제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운영평가 내역 상 기재된 예정원가가 회계처리 시 반영된 예정원가와 불일치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예정원가 변동에 대한 세부테스트 시 기중 예정원가가 변동된 거래가 없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아 외주가공비 계약변경으로 인한 기중 예정원가 변동 거래를 모집단에서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기존 계약과 구별되지 않는 계약변경인 경우 계약변경이 거래가격이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은 계약변경일에 누적효과를 일괄조정하여야 하며 일부를 이연할 수 없다. 또한 계약변경으로 인해 손실부담계약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된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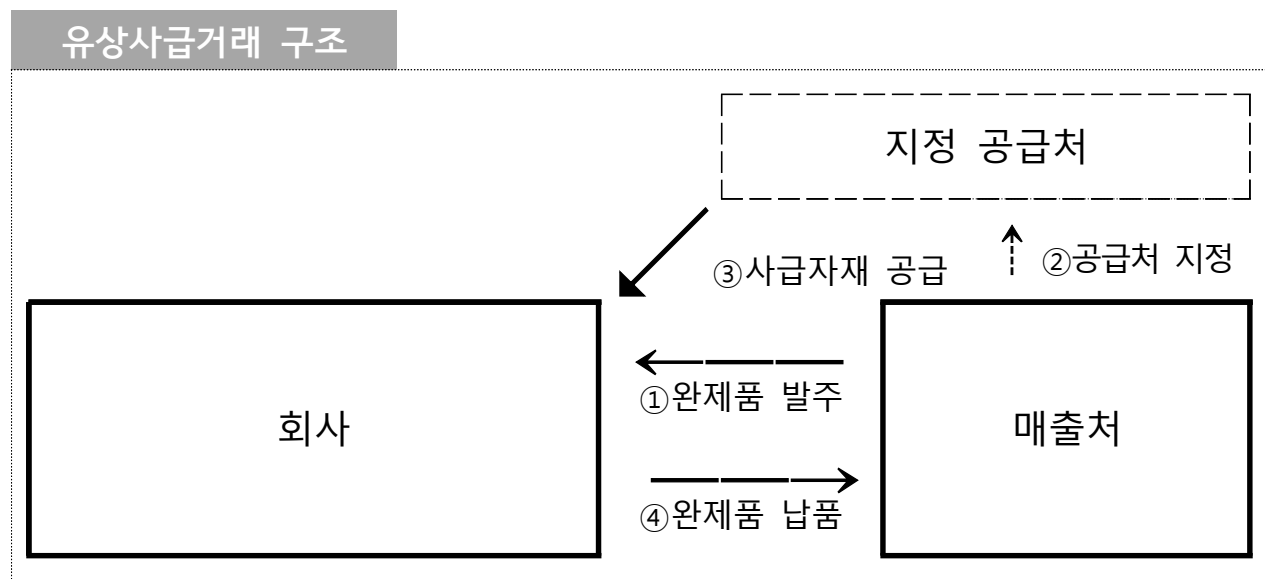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 항목 발견시 원인 파악을 위한 자료 징구, 질문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세부테스트 시 모집단의 완전성을 검증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FSS/2606-03 :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 쟁점 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 결정 연도 : 2025년
- ▣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요 매출처와 사급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처가 지정한 공급처로부터 원재료를 유상매입하여 동 유상사급재를 가공·조립한 뒤 완제품을 납품한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매입한 유상사급재를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 추후 완제품 납품 시 매출 및 매출원가에 동 유상사급재의 재고금액을 포함한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유상사급재에 대하여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아 동 사급재를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총액으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회계처리하지 아니하여 재고자산 및 매입채무를 과대계상하고 매출 및 매출원가 또한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3 및 문단 38에 따르면,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때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 (1)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 (2)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 (3)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
- (4)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이전되었다는 것은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능력이 고객에게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 (5)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유상사급재에 대하여 사용을 지시하거나 효익을 획득하는 데에는 실질·계약상 제약이 존재¹⁾하며, 회사가 유상사급재에 대한 법적소유권을 보유하고 보기 어렵고²⁾ 유상사급재에 대한 유의적인 위험을 보유하지 않는 점³⁾ 등을 고려해 볼 때, 회사가 해당 사급재를 통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1) 사급재를 해당 완제품 생산 외 사용·전용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며, 매출처와의 기본계약상 사급재의 사용 용도가 완제품 생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 2) 계약상 사급재의 법적소유권 이전 시기는 대금지급 이후이나, 채권·채무 상계약정에 따라 대금이 실제 지급된 이력이 없음
- 3) 회사는 사급재 매입액에 일정 마진을 가산하여 완제품을 판매하고, 매입 사급재는 완제품 제작에 사용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하므로 회사의 가격변동위험 및 재고위험 수준이 낮음

4. 시사점

회사는 사급거래 계약에서 원재료 등 사급자재를 유상으로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가 유상사급재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상 명시된 내용뿐 아니라 관련 사실과 상황에 대한 실질에 근거하여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동 사급재에 대한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유상사급재 가액이 매출 및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매출 및 매출원가가 총액으로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FSS/2606-04 :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오류

- **쟁점 분야**: 회계정책 변경 후 지분법 적용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 연도**: 2025년
- **회계결산일**: 2024.1.1.~2024.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6년 취득한 X사(이하 '관계기업') 지분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

y3년까지 유형자산 평가에 대해 회사는 원가모형, 관계기업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상이한 회계정책을 유지하였으며,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관계기업이 보유한 토지 관련 재평가잉여금에 대해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정책의 차이를 조정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y4년에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였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여전히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토지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y4년에 유형자산에 대한 회계정책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회사와 관계기업 모두 유형자산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게 되어 회계정책의 차이가 해소되었음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계기업 순자산에서 토지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한 후 지분법 평가를 수행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지분법기타 포괄이익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 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 및 문단 36에 따르면,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해야 하며(예, 유형자산 재평가·외화환산차이 등),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y4년 회사의 유형자산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해 회사와 관계기업 간 회계정책의 차이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기존 회계처리와 달리 관계기업 순자산에서 토지 관련 재평가잉여금을 차감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계정책 변경은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산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활용한다면, 회계정책 변경이 지분법 회계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FSS/2606-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 **쟁점 분야** : 공동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결정 연도**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모회사로부터 B사(이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양도받은 이후 B사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별도·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x1년 공동기업은 해외 사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해외중속기업의 지분 분류(관계기업 →공동영업) 오류, 해외중속기업의 이연법인세부채 누락을 발견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

회사는 상기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검토·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 지분법을 평가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공동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에도 동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공동기업투자주식 및 지분법손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10에 따르면, 지분법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 인식시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한다.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당기순손익으로 인식한다. 피투자자에게서 받은 분배액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여준다. 피투자자의 순자산변동이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자본 변동분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로는 유형자산의 재평가나 외화환산차이 등이 있다. 이러한 피투자자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액 중 투자자의 몫은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4. 시사점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시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공동기업의 회계처리 오류가 회사 재무제표상 지분법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오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FSS/2606-06 :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 쟁점 분야: 기타 자산·부채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
- 결정 연도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17.4.1.~2019.6.30.

1. 회사의 회계처리

신문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이하 '회사')의 실사주 甲은 부사장 및 회계담당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매각대금과 종속·관계기업으로 신사업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자금(선급금·대여금) 등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로 인한 자금의 공백을 은폐하고자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선급금·대여금 등 자산을 허위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및 선급금·대여금의 장부가액에 실사주 甲의 횡령으로 인한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 문단 15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59 등에 따르면,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 등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 그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자산으로 인식한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의 회수가능액이 횡령으로 인하여 장부금액에 미치지 않음에도, 이를 손상차손으로 적절하게 인식하지 않아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 등이 과대계상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조치없음

감사인은 선급금·대여금에 대한 실재성 및 회수가능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계약서 확인, 외부조회절차 수행, 거래상대방의 영업상황·담보가액 등 평가, 사후 자금회수 내역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조직적으로 횡령 사실을 은폐하여 감사인이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였다.

5. 시사점

회사의 핵심 사업 영역과 무관한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사업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재무제표 왜곡을 수반하는 허위 거래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경영진에 의한 부정 위험 가능성을 평가하고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감사 증빙을 확보함으로써 감사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FSS/2606-07 :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간 금액 배분 오류

- **쟁점 분야** : 전환사채의 부채 및 자본요소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결정 연도**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동 전환사채에는 채권자가 만기 전 발행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회사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조기상환청구권은 별도의 부채(파생상품)로 분리 인식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금액 중 부채요소인 주계약(일반사채)과 조기상환청구권의 공정가치를 먼저 산정한 뒤, 잔여금액을 자본요소(전환권)에 배분하였다.

회사는 전환사채 투자자가 두 가지 권리(조기상환청구권, 전환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계약(일반사채), 전환권 및 조기상환청구권이 모두 있는 전환사채의 가치에서, 조기상환청구권이 없는 전환사채 가치의 차이만큼을 조기상환청구권의 가치로 산정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전환사채의 부채요소(주계약과 조기상환청구권에 따른 파생상품부채) 및 자본요소(전환권)를 구분계상하면서, 자본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 장부금액을 결정하지 않아, 파생상품부채 및 전환권대가를 잘못 계상하는 등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31에 따르면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별도로 부채요소의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자본요소에 배분하며, 자본요소가 아닌 파생상품의 특성에 해당하는 가치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문단 32에 따르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자는 자본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한다.

4. 시사점

전환사채 등 복합금융상품 발행 시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를 우선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자본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비슷한 사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부채 요소의 장부금액을 우선 결정하여야 한다.

FSS/2606-08 :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소계상

- **쟁점 분야** : 사업결합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 **결정 연도**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온라인 종합 상거래기업으로 가격비교 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x2년 회사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타사 지분을 51% 취득하여 회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다.

회사는 종속기업 지분 취득 과정에서 종속기업의 공정가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측정된 순자산의 공정가치와 지급한 인수대가와의 차이금액에 대해 인수가격배분절차(PPA)를 수행하여 고객관계 등의 무형자산을 추가로 식별하였다

회사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종속기업 공정가치 측정 및 인수가격배분절차(PPA)에서 회사가 지분 취득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지분율(51%)만을 고려하여 추가 식별된 무형자산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사업결합 시 공정가치 측정 및 인수가격배분절차(PPA)를 통해 무형자산을 추가로 식별하는 경우, 회사가 취득한 지분과는 별개로 지분율 100% 기준으로 측정한 후 이를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추가 식별된 무형자산에 대해 지배지분(51%) 해당 부분만 인식함에 따라, 고객관계 등의 무형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10에 따르면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 인수 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13에 따르면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다.
-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18에 따르면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한다.

4. 시사점

사업결합 과정에서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고객관계 등의 무형자산이 추가로 식별되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체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여야 한다.

연결회계 관점에서 지배력 획득은 피취득자의 자산 및 부채 전체에 대한 통제를 확보한 것을 의미하므로 전체 지분율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이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비지배지분으로 자본에 반영하여야 한다.

FSS/2606-09 : 투자자간 약정 주식 미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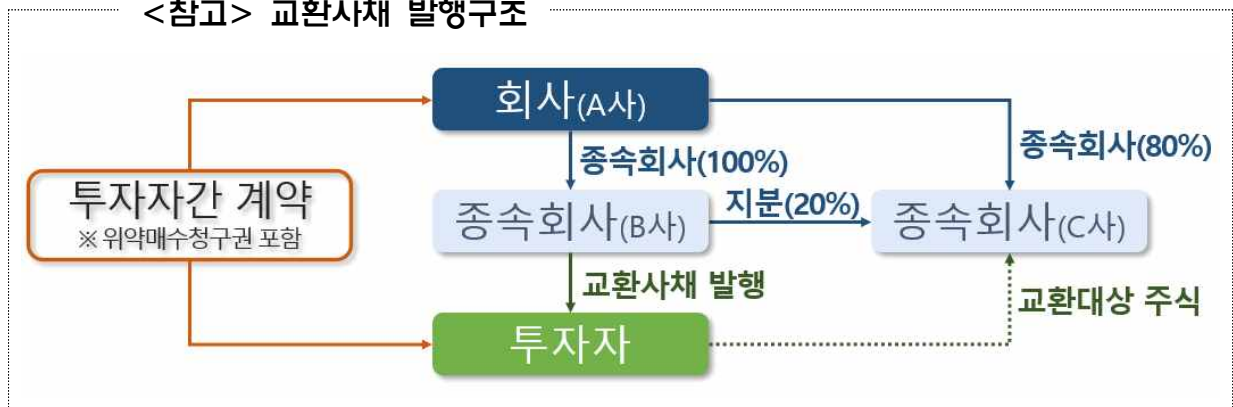
- ▣ 쟁점 분야 : 우발부채
-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 결정 연도 : 2025년
- ▣ 회계결산일 : 2023.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x3년 A사(이하 '회사')의 종속회사(B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교환사채 투자자와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에 따라 회사가 공동투자자로서 교환대상인 종속회사(C사)의 주요 경영사항 협의 등 계약상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해당 교환사채 및 교환대상회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위약매수청구권(Penalty Put-Option)을 투자자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종속기업 투자자와의 약정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주식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여 주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참고> 교환사채 발행구조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투자자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약상 의무사항 미이행 등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투자자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잠재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우발부채에 해당하므로 주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 동 의무조항은 계약 당사자간 역할과 책임을 정한 것으로 회사가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달성(위약매수청구권 회피) 가능하므로, 금융부채 인식요건은 불충족

3. 지적 근거

-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14은 주식 사례로 '우발부채'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보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약정사항은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10 및 문단 18에 따르면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우발부채에 해당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시사점

주주 및 채권자 등과의 투자자간 계약시 다양한 유형의 약정사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는 약정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약정사항 미이행 등으로 인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잠재적 의무가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FSS/2606-10 :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미공시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 연도** : 2025년
- **회계결산일** : 2023.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회사의 특수관계자 B사, C사 D사와 함께 시행사로 특수목적법인인 E사*를 설립하고 회사는 시공사를 담당하였다.

* E사 주주는 회사(29%), B사(40%), C사(29%), D사(2%)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가 C사와 D사를 지배하고 있어, E사는 회사의 종속회사에 해당

시행사인 E사는 x3년 사업구역 토지 매입을 위해 브릿지론을 조달하고, 공사 착공에 맞춰 x4년 본PF로 전환함에 따라 회사는 E사의 본PF 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 보유 시행사(E사) 주식을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하고, E사는 회사의 담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관리형토지신탁 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회사는 E사로부터 담보 제공받은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 개발과 관련된 사업부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각대금 등을 제3순위로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시공사로서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특수관계자인 E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부지 및 건설되는 부동산의 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수관계자인 E사가 회사에 제공한 담보 제공내역(관리형토지신탁 제3순위 우선수익권)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하며, 공시는 최소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내역 등을 포함해야 한다.

4. 시사점

특수관계자와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은 재무제표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기업의 리스크나 부채 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既 공개목록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1912-1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8
FSS/1912-2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재고자산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9
FSS/1912-3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9
FSS/1912-4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계기업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2018
FSS/1912-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8
FSS/1912-6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8
FSS/1912-7	지분법투자주식 과소계상	지분법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9
FSS/1912-8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송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8
FSS/1912-9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충당금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9
FSS/1912-10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9
FSS/1912-11	무형자산 과대계상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9
FSS/1912-12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8
FSS/1912-13	개발비 과대계상 등	개발비 인식요건	舊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8
FSS/1912-14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개발비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2019
FSS/1912-15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2019
FSS/1912-16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매도가능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8
FSS/1912-17	선급금 과대계상	선급금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1912-18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 과대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18
FSS/1912-19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상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2018
FSS/1912-20	담보제공자산 주식 미기재	주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2019
FSS/1912-21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기재 누락	특수관계자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18
FSS/1912-22	수익인식 오류	수익인식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9
FSS/1912-23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매출 계상	허위매출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1912-24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수익 인식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8
FSS/1912-25	연결범위 오류	연결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31호	2018
FSS/1912-26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유동성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9
FSS/1912-27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전환사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9
FSS/1912-28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과대계상	영업활동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2019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1912-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2019
FSS/2008-01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9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총예정원가 과소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7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7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2017
FSS/2008-06	공사수익·원가 인식 오류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07	공사수익·원가 인식 오류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1호	2016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 계상	공사수익·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39호	2016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공사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6
FSS/2008-10	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수익기간귀속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7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공사수익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6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7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2017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 주식(영업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6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매도가능금융 자산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17	파생상품평가손실 과소계상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파생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6
FSS/2008-20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유형자산 및 미수금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비업무용부 동산 손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2016
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골프회원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2015
FSS/2008-23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2017
FSS/2008-24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2016
FSS/2008-25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15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대여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7
FSS/2008-27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지급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7
FSS/2008-28	유형자산 주식 과소기재	주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016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주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038호	2017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식 기재 오류	주식기재 오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017
FSS/2008-31	연결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5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연결범위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5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계정 오류	전환상환우선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34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7
FSS/2106-01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2106-02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20
FSS/2106-03	매출 허위계상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4	수익인식(총액·순액) 오류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5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0
FSS/2106-06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0
FSS/2106-07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제1036호	2020
FSS/21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6호	2020
FSS/2106-09	선급금 허위계상	선급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1036호	2020
FSS/2106-10	대여금 허위계상	대여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0
FSS/2106-11	파생금융자산 과소계상 등	파생상품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106-12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파생상품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106-13	매출채권 허위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2020
FSS/2106-14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0
FSS/2106-15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0
FSS/2206-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1
FSS/2206-02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1
FSS/2206-03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	2021
FSS/2206-04	매출 허위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1
FSS/2206-05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21
FSS/2206-0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2021
FSS/2206-07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1
FSS/22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2021
FSS/2206-09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사업결합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21
FSS/2206-10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21
FSS/2206-1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21
FSS/2206-12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2021
FSS/2206-13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연결재무 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2021
FSS/2206-14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연결재무 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1
FSS/2206-15	특수관계자거래 주식 미기재	특수관계자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1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2311-01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매출 및 판매관리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22
FSS/2311-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2
FSS/2311-03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2022
FSS/2311-04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6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금융자산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2022
FSS/2311-08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2
FSS/2311-09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2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유형자산 매출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2022
FSS/2311-11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2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2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2
FSS/2311-14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기타채무 (관광전수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2022
FSS/2311-15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2
FSS/2311-16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특수관계자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2
FSS/2311-17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횡령손실 특수관계자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2022
FSS/2311-18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2022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매출,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2023
FSS/2405-0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매출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23
FSS/2405-03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매출, 매출채권 대손상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5장	2023
FSS/2405-04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5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수익인식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6	매출 기간귀속 오류	수익인식시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3
FSS/2405-07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3
FSS/2405-08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3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파생상품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3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2405-10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 계상	허위계약 허위 오류 선급금 허위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3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개별취득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23
FSS/2405-12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이연법인세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3
FSS/2405-13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3
FSS/2405-1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3
FSS/2409-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4
FSS/2409-02	종속회사의 밀어내기 매출을 통한 매출(연결) 허위 계상 등	매출 및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4
FSS/2409-03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인식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4
FSS/2409-0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 손상차손 미인식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4
FSS/2409-05	종속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28호	2024
FSS/2409-06	관계기업투자주식 추가 취득시 취득원가 오류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24
FSS/2409-07	재고자산 허위계상 및 감사인의 독립성 의무 위반	재고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2024
FSS/2409-08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허위계상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제1016호	2024
FSS/2409-09	퇴직급여충당부채 과대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개념체계	2024
FSS/2409-10	횡령 은폐를 위한 매출채권 허위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4
FSS/2409-11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무형자산 (개발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	2024
FSS/2409-12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오류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2024
FSS/2409-13	특수관계자 여부 및 거래내역 주식 미기재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4
FSS/2505-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제16장	2024
FSS/2505-02	매출 허위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4
FSS/2505-03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4
FSS/2505-04	매출 기간귀속 오류	금융리스계약의 수익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116호	2024
FSS/2505-05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공동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4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2505-06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재무제표 표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4
FSS/2505-07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2024
FSS/2505-08	리스기간 산정 오류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2024
FSS/2505-09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4
FSS/2505-10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2024
FSS/2505-11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금융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4
FSS/2505-12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09호	2024
FSS/2505-13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미기재	특수관계자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4
FSS/2505-14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식 미기재	담보제공사실 주식 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제1016호	2024
FSS/2512-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 및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5
FSS/2512-02	종속기업의 라이선스 수익 인식 오류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5
FSS/2512-03	관계기업투자주식 미분류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25
FSS/2512-04	관계기업투자 지분법 회계처리 오류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25
FSS/2512-05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제1001호	2025
FSS/2512-06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5
FSS/2512-07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과소계상 등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5
FSS/2512-08	유형자산 등 손상차손 미인식	유형자산 등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5
FSS/2512-09	개발비 등 과대계상	개발비 등 과대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25
FSS/2512-10	금융자산·부채 과대계상	금융자산·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5